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규정 등 관리규정

제정 2015. 11. 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규정, 내부규정, (시행, 운영)세칙 및 지침(이하 “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이하 “제·개정”이라 한다) 및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실 및 부속시설에서 제정·시행하는 규정 등에 적용한다. 단, 단일 학부(과)의 규정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규정 등의 번호)** 규정 등은 농업생명과학대학 공포대장에 의거하여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의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규정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규정 등 안의 입안)** 규정 등 제·개정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제·개정 사유
2. 제·개정(안)의 주요 골자
3.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4. 제·개정안 전문

**제5조(규정 등 안의 확정 및 공포)** ① 행정실 및 부속시설이 정한 제·개정 절차(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교수회규정 별표1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업무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최종 심의·의결기구에서 의결된 규정 등은 확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확정된 규정 등의 공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규정 등 확정이 이루어지는 기구를 주관하는 행정실 및 부속시설에서 서무행정실로 공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규정 등은 최종적으로 학장 승인을 받아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공포한다.

③ 내부규정, (시행, 운영)세칙 및 지침의 제·개정에 한하여 제1항의 절차를 자체

내부절차(내부결재, 품의 등)로 갈음할 수 있으나, 행정실장 및 학장의 결재를 반드시 득하고 공포 절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규정 등의 효력제한)** 이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규정 등은 규정 등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부칙(제102호, 2015.1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자 이전 학장 결재(내부품의 또는 학장 명의의 시행공문)를 통해 이미 사용 중인 누년 일련번호가 없는 규정에 한하여 2015. 11. 20.(금)까지 관련 서류를 서무행정실로 제출, 학장 결재를 득한 후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